



2024.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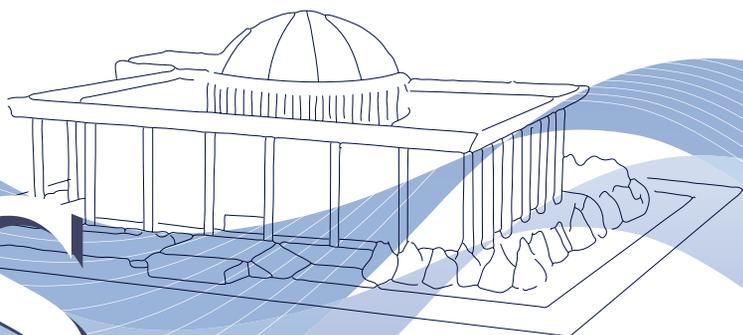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윤아 |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NARS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윤아(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2024. 9. 26.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4. 9. 26.)되었습니다.

요 약 표

분석 대상	대상조항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5917) 제159조제2항제5호~제7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9조제2항 제5호~제7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후 관련 공시항목 추가 	
	입법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중요 정보를 의무공시하도록 규정하여,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비재무적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을 식별·관리하도록 유인하고 대응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포함하여, 공시의무와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 - 피규제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전체 상장기업 등) - 수혜자: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주주), 연관 서비스 산업 	
	규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신설 	
인프라 영향 분석	주요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 정보 확대) 비재무적 정보인 기후변화 관련 중요 정보를 추가 공개하여야 하고, 기업이 관련 대응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는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촉진함 (공시대상 기업 확대) 법상 관리업체나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됨 - 기업규모나 산업별 특성 차이 및 공시 준비역량 등 국내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공시규제 도입은 전환·공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분야별 영향분석	정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하고 부실기재 관련 행정적 제재조치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추가 부담될 수 있음
		경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의무공시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전담조직, 인력 및 자원 배분 등 이행·관리를 위한 공시부담은 증가할 것이나, 글로벌 ESG 공시규제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현재 정부가 거래소 공시를 통한 단계별 의무공시 형태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ESG 공시체계를 재 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주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비재무적 정보의 유용성, 투명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표준화된 공시기준(측정지표, 방법론 포함) 등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거나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음 •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기후 및 환경성과 지표에 대한 의무공시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임 • (ESG 관련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등 비재무적 정보를 수요공급하는 ESG 관련 주요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영향력 및 책임도 점차 확대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평가, 자문·컨설팅, 인증, 데이터 제공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환경 개선에 관한 목표 수립 및 이행·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확대 등 환경 관련 위험요소 중에서, 기업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 요인이 완화되는 간접적 개선효과가 예상됨 	
비용과 편익	주요 항목 (정성)	구분	직접	간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 및 부대비용 증가 [장기] 기업의 공시 및 중장기적 전환이행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설비 투자비용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관련 조사·감독·제재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 환경 관련 주주관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응 및 법적책임 부담 증가

		편익	<p>[단기]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 개선, 투자자 보호에 기여</p> <p>[장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 시장 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련 주요 서비스 산업 성장 및 시장의 수요·공급 확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완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
	이해관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기후를 포함한 ESG 공시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한 이후 주요국 제도 동향 및 기업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 의무화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경제계) 구체적인 공시기준이 부재하고, 개정안이 제시하는 공시대상 기업 및 정보의 범위가 과도하여 규제 이행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됨
	유사입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연합(EU)·미국) 최근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공시 대상기업 및 적용시기에 관한 로드맵을 우선 발표하고, 법률 또는 거래소 규정을 통해 기후 부문부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차 례

□ 요약표

I. 분석 대상 / 1

- 1. 입법 배경 및 목적 1
- 2. 주요 내용 6

II. 입법영향분석 / 10

- 1. 주요 영향분석: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10
- 2. 분야별 영향분석 18
 -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8
 -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1
 -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9
- 3. 비용과 편익 분석 42

III.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44

- 1. 의견수렴 대상 44
- 2. 주요 내용 44

IV. 유사입법례 / 48

- 1. 유럽연합(EU) 48
- 2. 미국 51

V. 사후분석 제안 / 55

□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근거 법령	5
[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7
[표 3]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체계 현황	12
[표 4] 연도별 국내 ESG 관련 보고서 공시기업 수	14
[표 5] 국내 ESG 공시제도 단계별 의무화 방안	15
[표 6]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현황	16
[표 7]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제재조치 유형	19
[표 8]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실제 예시	21
[표 9] 개정안에 따른 규제 전후 대상 비교	23
[표 10] 글로벌 지역별 책임투자 자산규모 추이	31
[표 11]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요소	32
[표 12] 국내 ESG 평가기관 운영 개요	36
[표 13]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43
[표 14]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44
[표 15]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50
[표 16] 미국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53

I.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¹⁾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이를 활용한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²⁾ 국가 또는 지역 단위별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제도를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기업의 ESG 정보는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GRI, TCFD, SASB 등)³⁾에서 제시하는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기준 또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자율적 지침의 형태로 현재 개별 기업마다 작성기준을 재량적으로 선택하여 보고하고 있음
 - 이처럼 재무적 정보에 대비하여 지표나 측정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재무적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옴(BlackRock,

-
-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과 연계된 경영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혼용되고 있음. 개념적 차이는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서술을 ‘ESG’로 통일하였고, 추후 해당 입법 과정에서는 법률상 일관된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적용 총 자산규모는 2023년 말 기준, 587.2조 원 수준(2022년 대비 52.9% 증가)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가 확인됨(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23)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22) 공시내용 참고, 최종 검색일: 2024.9.5.)
 - 3) ESG 공시와 관련된 대표적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등임

2016; Kotsantonis and Serafeim, 2019; Christensen et al., 2022)⁴⁾

- 따라서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 및 공개하기 위해 표준화된 글로벌 공시기준(global baseline)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재단은 2021년 11월 COP26 회의를 통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의 설립을 발표함
 - 이후 2023년 6월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였고, 특히 ESG 부문 증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공시기준부터 최초로 제시함
- 참고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ISSB가 권고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ESG 공시기준을 수립하고, ESG 관련 정보공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임
- 해외의 대표적 사례로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이 있음
 - 이 외에도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ESG 관련 정보공시 제도를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국에 적용할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된 절차를 병행 중임⁵⁾

4) BlakRock, *Exploring ESG: A Practitioner’s Perspective*, 2016, p.8.; Kotsantonis, S. and G. Serafeim, 2019, Four things no one will tell you about ESG data,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31(2), pp.50-58.; Christensen, D. M., G. Serafeim, and A. Sikochi, 2022, Why is corporate virtu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case of ESG ratings, *Accounting Review*, 97(1), pp.147-175.

5)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2024.4.12.

- 구체적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 기업 및 공시항목의 범위, 공시채널, 시행시점 등의 차이는 존재하나,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ESG 관련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기업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글로벌 표준으로 ISSB의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이 우선 수립·발표되었기 때문임
- 국내의 경우, ESG 정보공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공시 로드맵 확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s, 이하 ‘KSSB’)’ 설립을 통해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2024년 4월 30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초안⁶⁾과 기후 부문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함
- 그러나 현재 ESG 부문별로 기업이 정보를 공개 또는 공시하는 채널 및 해당 정부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ESG 정보공시를 일원화된 공시체계로 통합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 등 관련 법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임

6)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에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의 경우, 동법 및 하위규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 외에 일부 환경·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⁷⁾([표 1])
- 이 외에도 국내 ESG 관련 정보의 공시체계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기업지배구조보고서⁸⁾, 지속가능경영보고서⁹⁾)와 별도 개별법상 공개제도¹⁰⁾ 형태로 각각 운영 중임
- 종합하면, 현재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ESG 관련 정보공시 의무는 소관 법률 및 관계 정부부처, 공시채널 등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세부 공시사항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임

-
- 7)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 8)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자율공시) 규정 제28조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7.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어떤 명칭으로도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기타 보고서를 포함한다) 관련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7의2. 규정 제24조의2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표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근거 법령

법률·규정	내용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주식매수선택권 포함)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 및 방법(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확인·검토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내용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다. 우발채무 등 라. 제재현황 마.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사.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아. 자금의 사용내역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 충족 여부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관리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카.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에 대한 인증 및 녹색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상각의 사유가 되는 가격·지표·단위·지수의 현황에 관한 사항 파. 파견근로자 현황 하.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감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결과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재정리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 관련 기회 및 위험의 내용과 대응전략에 관한 공시를 법률로 추가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상장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식별·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임
- 해당 개정안은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 중 기후 부문에 초점을 맞춰,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높여 해외의 ESG 공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2.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 관련 기회 및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권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중요한 정보공개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범위에는 주권상장법인 외에도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500인 이상의 증권소유자가 존재하는 비상장법인 등이 포함됨¹¹⁾

11) 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

- 사업보고서 공시에 관한 주요 기재사항은 기업의 일반 개요, 사업내용, 재무적 사항, 소유구조, 이사회 및 감사제도, 임원의 구성 현황 등으로,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통해 공시항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음

[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p> <p>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본 보고서의 분석 범위)</p> <p>〈신설〉</p>	<p>5.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p>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u>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목표</u></p> <p>7.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p>
<p>③ ~ ⑦ (생략) 〈신 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59조의2(기후변화 대응계획 등)</p> <p>① 이사회는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회사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직후에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p> <p>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p> <p>④ 주권상장법인이 연결재무제표 작</p>

현 행	개 정 안
	<p>성대상법인인 경우, 종속회사 중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 작성한 대응 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제2항 및 제3항의 안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의 안전은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되, 해당 결의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이사회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안전을 부결한 경우 이사회는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당 내용에 허위 또는 부실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함
- 사업보고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손해배상책임(제162조), 행정조치(제164조), 과징금(제429조), 형사처벌(제444조, 제446조)임

II.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기간별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하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이는 국내 기업이 기후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허위 또는 부실 기재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의무공시 대상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및 기후 관련 내부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취지임
- 먼저 ESG 관련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현행 국내 공시체계와 개정안 간 공시항목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와 ②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근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의 ‘자율공시’, ③ 개별법에 의한 ‘공개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검토함 ([표 3])
 - 개정안에서 추가 기재사항으로 제시한 내용 중 일부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하위규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의해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되고 있음
- 첫째, 기후 관련 공시채널로 특정한 ‘사업보고서’의 경우 현재 국내 상장기업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舊,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및 계획은 ‘녹색경영’¹²⁾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에 해당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자율공시 대상 항목에도 포함되어 기재 요구사항 일부가 중첩됨
- 그러나 현행 규정은 기후 관련 기회 또는 위험과 대응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타 법률에서 정하는 ‘관리업체’¹³⁾에 한정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한다는 차이가 있음¹⁴⁾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13) 참고로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이고 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https://keco.or.kr/web/lay1/S1T164C1006/contents.do>>, (최종 검색일: 2024.9.5.)

1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표 3]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체계 현황

구분	내용
사업보고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라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차목, 카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환경물질 배출,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 준수사항, 환경개선 설비 관련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제4항
한국거래소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영정보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확인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등 제재조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 경영정보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8조제7호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13조제12호
개별법상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공시: 환경보호·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관리를 위한 목표 및 활동 계획(저감투자, 기술도입), 환경관리 성과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녹색경영 시스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재정리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한다.)

- 이에 개정안은 추가로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요소별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고, 개별 기업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 관련 대응계획¹⁵⁾을 수립하여 이행 현황 등을 매년 제시하도록 규정함
 - 한편,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고 있어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¹⁶⁾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둘째,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근거한 자율공시 형태로는 환경 및 사회 관련 정보의 공시채널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있으나, 아직 보고에 관한 명확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글로벌 이니셔티브(GRI, SASB, TCFD) 중에서 기업이 재량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Environmental) 관련 기후·위기 요인 및 대응계획, 사회(Social) 이슈 관련 노사관계·양성평등 개선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 형태를 총칭함¹⁷⁾¹⁸⁾

1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제4항의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이란 설비투자 관련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대응계획’ 중 일부 재무적 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됨

16) ESG 관련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 중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투자자 관점(outside-in)에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과 지속가능성 관점(inside-out)에서 기업이 환경·사회 등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임팩트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이 있고, 재무적 중요성에만 초점을 맞춘 ‘단일 중대성’과 달리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은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성 판단기준을 의미함

17) 참고로 현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ESG보고서, 통합보고서, CSR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발간되고 있음

18)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정보를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시하는 제도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17년 3월 자율공시 형태로 최초 도입된 이후

[표 4] 연도별 국내 ESG 관련 보고서 공시기업 수

(단위: 개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195
(2) 기업지배 구조보고서	70	95	209	221	227	353	376	531
의무	-	-	200	211	215	345	366	526
자율	70	95	9	10	12	8	10	5

주: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포함한 수치임(비상장사는 제외)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공시로 대체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수는 한국거래소 제출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한국거래소 ESG포털(최종 검색일: 2024.9.5)

- 2021년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활용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¹⁹⁾
- 이후 2023년 5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단계적 의무공시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나,²⁰⁾ 2023년 10월 국내 ESG 공시의 최초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고 언급함²¹⁾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의무공시가 적용되어 현재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22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 '24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26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1.14.

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2023.5.12.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 개정안과 달리, 현재 정부는 국내 ESG 공시기준을 확정된 후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부문부터 거래소 공시를 통해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²²⁾

[표 5] 국내 ESG 공시제도 단계별 의무화 방안

구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미정) → 연기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 억원 이상	전체 코스피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재정리

- 셋째, 환경 부문 관련 개별법상 공개제도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근거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있음²³⁾
 - 해당 제도는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 부문 관련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부터 도입·시행 중임(’22년: 의무화)
 - 공개대상 기업은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목표, 계획 및 성과를 포함한 ‘녹색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024.4.22.

23) 현재 국내 ESG 부문별 정보공개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환경정보공개제도(E), 고용현황공시제도(S),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G)가 별도 운영 중이나, 각 제도마다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등 차이가 있음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 및 자율 항목을 차등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공개정보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개별법에 근거한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²⁴⁾에 공개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는 차이가 있고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표 6]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유가증권시장	778	778	795	796	809
코스닥	1,326	1,394	1,457	1,518	1,598
코넥스	152	143	131	132	129
기타	358	552	588	592	566
합계	2,614	2,867	2,971	3,038	3,102

주: 주권상장법인 외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기타’로 분류함
 (외국주권,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표본에서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DART), 한국거래소(KIND)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중요성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가 세분화되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기후 관련 공시의무가 확대 적용되는 추가 규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개정안은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식별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 관련 이행 현황 및 거버넌스(governance)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

24)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s://www.env-info.kr/>)

하도록 정보공시 채널을 일원화하여, 기후 관련 비재무적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 한편, 기존 법상 관리업체²⁵⁾나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안에 의해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추가 공시부담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국내외 기후 관련 공시의 주요 논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수준(Scope 1·2·3) 등 공시대상 정보 및 적용기업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으로 강제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에 따라 해당 공시규제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에 일괄 도입하는 경우, 기업규모나 산업별 특성 및 공시 역량 등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규제대상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환경정보공개 대상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녹색기업이 아니거나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중소·중견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후 관련 정보항목을 공시·관리하여야 함
-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정책 방향,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 및 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기후 관련 법정공시 의무화 논의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국내 ESG 공시 시행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고,²⁶⁾²⁷⁾ 의무공시 대상기업의 범위 및 구체

25) ‘관리업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서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법률은 폐지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대체·이관됨

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27) 이와 같은 결정의 근거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 적인 도입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 후 확정하겠다고 발표함²⁸⁾
-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적용한 제도화 방향은 거래소 공시체계를 통해 우선 시행하고, 적용대상의 범위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확대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행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기후 관련 다양한 정보 공시 항목들 간의 중첩 문제를 최소화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우선 확보하고,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여건 등 국내 기업의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재사항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예측정보 및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허위공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추정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증제도 수립 등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 전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마련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 개정안은 공시주체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가 기존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기재사항에 기후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23.6.)된 점 등을 언급함

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024.4.22.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기]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제재조치 유형

구분	내용
손해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에게 손해에 관한 배상의 책임 부과 ○ 예측정보는 추정의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와 주의문구 등이 밝혀져 있는 경우, 손해에 관한 배상의 책임 면제 (단, 중요사항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시행령 제175조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항 관련 부실기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미제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28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재정리

-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감독을 통하여 해당 내용의 허위 또는 미기재 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표 7])
 - 예컨대, 기후변화 관련 기간별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가 수시공시(공정공시)의 형태가 아닌 사업보고서상 공시정보에 편입되면 사후적으로 기업 측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부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사법적 제재)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 외의 행정적 제재는 사업보고서의 미제출과 중요사항 관련 부실기재에 대한 조치임
- 이에 의무공시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규모별로 최초 시행시점을 유예하거나, 공시대상 법인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보호조항(Safe harbor)을 하위규정에 명시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추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사전 예고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된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점검 실시, 정정조치 및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가 수반됨
 - 중점점검 항목은 크게 재무공시사항과 비재무공시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어([표 8]),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기후 관련 정보가 추후 중점점검 대상의 비재무공시사항에 선정되는 경우 전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조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표 8]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실제 예시

<p>[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공시사항: 12개 항목, <u>비재무공시사항: 2개 항목</u> ○ 비재무공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 등의 사후정보 <p>[202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공시사항: 14개 항목, <u>비재무공시사항: 5개 항목</u> ○ 비재무공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적정성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p>[20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공시사항: 11개 항목, <u>비재무공시사항: 7개 항목</u> ○ 비재무공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기후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일괄 적용되는 경우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 국내 상장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 관리업체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이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선택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의무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것임

- 실제 한국거래소가 2023년에 제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공시한 기업은 78%,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공시한 기업은 74%, △양적·질적 재무적 영향을 분석 공시한 기업은 56%,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한 기업은 48% 수준으로 조사됨²⁹⁾
- 한편, 상기에서 언급한 기존의 의무공시(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지 않은 상장기업은 모두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이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표 9])
- 현행 공시체계에서 관리업체나 환경정보공개 대상인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채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환경영향 및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속하거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안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관련 정보와 관련 감축목표,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관리하여야 하는 추가 부담이 주어지게 됨
- 특히 현재 거래소 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중소·중견 상장기업의 경우, 법정공시에 의한 일률적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에 비해 공시여건 및 인력 확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 기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29)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2023.12.28.

[표 9] 개정안에 따른 규제 전후 대상 비교

현 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시] 사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계획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공개 대상* (업종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목표 및 활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계획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미해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시] 	
<p>* 녹색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p>	

- 최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 부문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에 관한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업 전반의 ESG 공시규제 대응과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을 자체 식별·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초래하는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이 ‘0’인 상태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 상태 즉, 넷제로(Net-Zero)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로 자국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2024년 9월 기준, 총 43개국으로 조사됨(한국 포함)³⁰⁾
 - 이 외에도 정부의 정책문서 및 공약 형태로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64개국이고, 현재 제안을 통해 논의 중인 국가는 53개국임
-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개국에서 총 2,180건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는 2017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로, 과거에 비해 점차 기업의 환경성과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개선 요구와 관련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³¹⁾
 - 최근 국내외에서 정부 및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후 관련 목표와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거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소송을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등 해외 주요국에서 기후 부문을 시작으로 ESG 공시기준 및 단계적 공시 의무화 방안을 채택·발표하고 있어, 향후 국내 일부 기업도 공시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짐
 - 실제 EU의 CSRD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대규모 기업(비상장 포함) 외에도 非EU 기업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기업 또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직간접적인 공시의무가 발생할 예정임³²⁾

30) Net Zero Scorecard, 2024 SCORECARD, Data Explorer<<https://eciu.net/netzerotracker>, <https://zerotracker.net>>(최종 검색일: 2024.9.5.)

31) UN Environment Programme(UNEP),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2023.7.27.

32) 현재 2025년부터 공시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소수로 파악되나, CSRD

- 또한 ISSB의 IFRS 공시기준 및 EU의 CSRD는 Scope 3(기타 간접배출 즉, 협력업체 등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정보공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움직임은 공급망에 속한 국내 수출 대·중소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³³⁾
 - 따라서 현재 ESG 정보 관련 필수 공시항목 범위에 대한 국내 규정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성 기준에 근거한 공시항목을 사업 보고서 내 의무공시 사항으로 우선 도입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기후 관련 대응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Downar et al.(2021)은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관련 공시 의무화 도입 효과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의무공시 도입 이후에 적용대상 기업(treatment group)의 배출량 수준이 비교기업군(control group) 대비 약 8% 수준으로 감소함을 보고함
 - 이 외에도 수출 비중이 높고 공시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에 해당할수록,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ESG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Wang, 2017; Fahad and Nidheesh, 2020)
- 다만, ESG 관련 공시규제가 기업에게 ‘기회’인지 ‘비용’인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상충되고 있는 상황임³⁴⁾

의 대규모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EU 소재 중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非EU 또는 EU 역내 매출이 유의적인 국내 기업들은 각각 2026년, 2029년부터 EU 국가별 공시기준에 따른 기후 공시규제 대상에 해당함

33) 참고로 2023년(잠정치) 기준, 對EU 수출기업 수는 대기업 610개사, 중견기업 1,204개사, 중소기업 16,972개사로 파악됨<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EC227&conn_path=I2>(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최종 검색일: 2024.9.5.)

3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SG ATOZ: 10.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규제와의 상관관계」,

-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경쟁력 확보, 환경 관련 규제 변화의 대응, 부채·자본 조달비용 감소, 소비자 선호도 및 기업평판 제고의 측면에서는 ESG 공시를 통한 내부 관리효과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임
- 반면, ESG에 관한 방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산출 등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정보공개 관련 감사(인증) 비용, 소송 리스크 등 책임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체 수립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³⁵⁾와 같이 규제 준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개정안에 의해 기후 관련 공시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은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이행함에 따라, 산업 부문 등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지출과 기술개발(R&D) 비용이 증가할 것임
 -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전환 관련 투자규모를 추정한 결과, 2030년까지 연간 3.8조 달러,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연간 4.7조 달러 수준을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출하는 투자비용으로 전망함³⁶⁾
 - IEA(2021)는 넷제로 목표(Net Zero Emissions by 2050, NZE) 달성을 위

『Issue Paper』, 2021.8.

35) ‘전환 리스크’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 및 경제적 비용(cost)을 의미하고, 예시로 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탄소 배출 비용의 증가 등이 있음

36) UNFCCC, *Net Zero Financing Roadmaps*,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2020, 2021.

해 2030년까지 매년 5조 달러의 투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50년까지의 예상 누적 투자규모는 140조 달러로 이는 글로벌 GDP의 2.5%에 해당함³⁷⁾

- 국내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 할인율(3.5%)을 가정할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누적 투자규모는 2,097조원이고 예상 연평균 투자 금액은 70조원 수준으로 실제 저탄소 전환이행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³⁸⁾
- 특히 대규모 기업에 비해 중소·중견 기업은 기후 및 환경 관련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역량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해 일률적인 공시의무가 강제 적용될 경우 공시정보 생산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행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클 것임
- 국내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환경우량기업 대비 중소·중견 규모에 해당하는 환경한계기업의 배출 규모가 32.1배 더 크고 2.8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³⁹⁾⁴⁰⁾
-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8월 국내 상장기업 100개사(대기업 59·중견 41개사)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

37)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Special Report 4th Revision, 2021.

38) 송홍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3.

39) 이상호,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1.

40) 해당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보상배율(=영업이익/탄소보상비용)을 산출하여 탄소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은 ‘환경한계기업’, 탄소보상배율이 70이상인 기업은 ‘환경우량기업’으로 정의함

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실제 공시를 위한 기업 내부의 역량 및 준비여건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⁴¹⁾

- 응답한 기업들 중 88%는 ESG 공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이유로 △ 이해관계자에 중요한 정보라는 점(46.6%),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 파악(30.7%) 등의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기업 측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 및 취합의 어려움(63%),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60%), △내부 전문 인력 부족(52%), △외부 전문기관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46%) 등을 제시함
- 현재 ESG 공시를 위한 자체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내부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14%, 9.4%에 불과하였고, ESG 공시에 투자하는 비용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50.9%), 2억원 이상(28.3%)으로 답변함
- 추가로 국내 ESG 관련 정보 의무공시와 함께 제3자 인증절차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의 이행부담 요인과 정보 신뢰성 제고의 편익을 비교하여 실효적인 공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⁴²⁾
- 유럽연합(EU)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예상 인증비용은 인증수준에 따라 대기업은 1억 500만원~1억 7,500만원, 중소기업은 2,300만원~3,800만원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⁴³⁾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 관련 입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41)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2023.8.28.

42) 이상호,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1.

43) EU, Proposal for a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2021.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 관련 의무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를 국내 상장기업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의 준비상황 및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기업부터 ESG 공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도 일률적으로 공시의무를 적용하기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공시 이행여건 및 산업별 특성 차이를 감안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거래소 공시)를 통한 단계별 의무공시 도입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어,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 중인 ESG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중복공시 규제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후 관련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요성(materiality)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개정안에서는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을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 정의는 제시하고 있지 못함⁴⁴⁾
 - 실제 기업의 ESG 성과는 중요도가 높거나 핵심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표가 우수한 경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어(Khan et al., 2016; Grewal et al., 2021), 공시정보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 중 최소한의 중요한 정보를 의무공시 항목으로 선별하여야 함

44) 추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최종 발표할 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이행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할 것을 제언함

(2)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

- 개정안은 기후변화 관련 중요한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 먼저 개정안에 따라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경우,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해당 정보에 대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는 기후 및 환경 등 ESG 관련 정보를 투자 포트폴리오(펀드) 구성에 활용하는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상장기업의 ESG 정보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는 크게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소액주주)로 구분할 수 있음
 -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보고서에 따르면,⁴⁵⁾ 2022년 기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글로벌 주요국의 책임투자 자산규모는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표 10]), 실제 활용된 책임투자 전략 유형은 주주 관여 및 주주활동, ESG 통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순으로 나타남⁴⁶⁾
 - 국내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 정책들이 수립·이행 중이고,⁴⁷⁾ 2016년 12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⁴⁸⁾ 이

45)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2*, 2023.11., p.11.

46) ESG 통합 전략(ESG integration)이란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과정에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을 뜻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은 ESG 평가 기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및 대상 기업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배제(exclusion)하는 책임투자 전략을 의미함

47) ESG 채권 발행·펀드 활성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녹색채권·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ESG 금융상품 다양화, 공공부문(연기금·정책금융기관)의 ESG 투자 활성화 등(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1.8.26.): 기획재정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안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022.12.27.): 기획재정부 제13차

후 국내 연기금 및 민간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책임투자 전략에 ESG 요소를 확대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⁴⁹⁾

[표 10] 글로벌 지역별 책임투자 자산규모 추이

지역	2014	2016	2018	2020	2022	CAGR* (‘14-’22)
유럽 (EUR)	9,885	11,045	12,306	10,730	12,401	4%
	증감률	12%	11%	-13%	16%	
미국 (USD)	6,572	8,723	11,995	17,081	8,400	3%
	증감률	33%	38%	42%	-51%	
캐나다 (CAD)	1,011	1,505	2,132	3,166	3,014	15%
	증감률	49%	42%	48%	-5%	
호주·뉴질랜드 (AUS)	203	707	1,033	1,295	1,680	30%
	증감률	248%	46%	25%	30%	
일본 (JPY)	840	57,056	231,952	310,039	493,598	122%
	증감률	6,692%	307%	34%	59%	

주: 자산규모는 10억 단위로 제시하였고 모든 수치의 단위는 각국 화폐를 기준으로 함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연평균 성장률)

자료: GSIA(2023)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ESG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환경 관련 공개정보 등을 통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표 11])

비상경제차관회의(2022.12.9.) 안건 참고)

- 48)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명칭으로 제정·발표되었고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됨
- 49)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7월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2021년 5월 탈(脫)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위한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negative screening) 전략 도입을 선언하였으며, 2023년 3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E)와 산업안전(S)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표 11]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요소⁵⁰⁾

구분		정의	평가지표
환경 (E)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에너지 사용량 평가
	환경영향 관리	자원 사용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시스템 외부인증 ◦ 환경경영 목표 설정 ◦ 청정생산 관리 활동 ◦ 용수 사용량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폐기물·화학물질 배출량
	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관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 친환경 특허 ◦ 친환경 제품 인증 ◦ 제품 환경성 개선

자료: 국민연금기금(2023)

- 또한 기후 부문을 포함한 ESG 관련 공시규제 강화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 등 투자 리스크를 예방하여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시기준이 모호하거나 제3자 인증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및 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ESG 공시의무 확대에 공시정보의 양이 증가하였음

50)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기준」, 2023.

에도, 공시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정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함(Christensen et al., 2022)

- 실제 글로벌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지속가능성 성과 관련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답변하였으나 글로벌 공시기준 적용 및 제3자 인증을 통해 기업이 투자자가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⁵¹⁾

(3)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본 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 외에도,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평가(valuation)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후 및 환경 관련 정보공시는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여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정보효과가 있음을 시사함(Dhaliwal et al., 2012; Rossi and Harjoto, 2020; 노정희·최중서, 2016; 이기세·전성일, 2019; 박지영 외, 2023)
 - 따라서 ESG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도입은 동종산업 내 비교대상 기업(peer)과의 정보 비교가능성을 높여, 기업 스스로 ESG 대응수준을 높이는 자체규율(self-discipline)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 반면, 기업의 ESG 경영활동 강화와는 달리 공시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함

51) PWC, *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3: Trust, tech and transformation: Navigating investor priorities*, 2023.11.

- 오히려 투자자들은 ESG 관련 규제를 위험요소로 인지하고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거나, 환경 관련 저감활동 및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을 기업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음(Grewal et al., 2019; Bolton and Kacperczyk, 2023)
- 한편,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 체계 하에서도 기업 스스로 역선택을 피하고자 의무공시로의 전환비용(conversion cost)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적의 비용-편익 수준에서 자발적 정보공시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Akerlof, 1970; Dhaliwal et al., 2011; Matsumura et al., 2014)
- 이에 일관된 ESG 공시기준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절차 마련 등 ESG 공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용-편익 관점에서 우선 자율공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 구축 유인을 충분히 제공한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률적 규제 도입의 비효율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ESG 관련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개정안은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요인을 자체 식별·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정기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국내 ESG 관련 주요 서비스 산업의 영향력 및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국내외 ESG 관련 서비스 산업은 크게 ① 평가, ② 컨설팅, ③ 인증, ④ 데이터 제공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평가)** ESG 평가기관은 국내 상장기업 전체의 기후변화 관련 중요 정보가 일원화된 공시채널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기존보다 기초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정보 유용성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함

- 현재 환경 및 사회 부문 관련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는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에 참여한 기업에 한정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ESG 관련 공개정보에 대한 검증 및 감독체계가 미흡하여 기업 측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지표 산출 및 측정 기준도 개별 기업마다 상이하여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낮은 편임
- 이에 개정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관된 공시체계에 의해 국내 평가대상 기업의 기후 관련 중요 정보가 제공된다면, 평가기관의 데이터 수집 과정이 용이해지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정형화된 공시자료 상의 재무적 지표를 분석하는 신용평가와 달리, ESG 평가 목적의 기초 데이터는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공시지표나 형식의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ESG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이 낮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된 바 있음(Chatterji et al., 2016; Billo et al., 2020; Boffo and Patalano, 2020; ESMA, 2021; Berg et al., 2022; 이인형, 2021)
- 참고로 국내 기관에 의한 ESG 평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주요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음([표 12])
 - 상기 3개 평가기관은 기관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책임투자 분석 및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engagement) 관련 자문 사업도 함께 수행 중임
 - 이 외에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산하의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022년부터 ESG 평가와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최근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2] 국내 ESG 평가기관 운영 개요

기관명	내용
한국ESG기준원	○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 ⁵²⁾ 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로('02년 설립), 2003년부터 지배구조(G) 부문 평가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환경(E) 및 사회(S) 부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통합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ESG연구소	○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경제연구소 산하 별도 독립법인의 형태로, 2014년 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ESG 평가로 확대함
서스틴베스트	○ 2006년 설립 후, 2007년부터 자체 ESG 평가모형(ESGValue™)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공개자료 참고 재정리

- (컨설팅) ESG 관련 자문·컨설팅 서비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책임투자 자문, 기업 내부 ESG 전략수립 및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부문으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국내 ESG 공시 등 관련 정책·제도적 방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이 육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국내 4대 회계법인은 별도의 ESG 자문 관련 총괄조직을 신설하여 기업의 ESG 전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평가 대응 컨설팅, ESG 감사 및 인증 관련 사업을 수행 중임⁵³⁾
 - 또한 일부 법무법인⁵⁴⁾에서는 내부에 ESG 담당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ESG 관련 법률 및 해외 규제(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 ESG 책임투자,

52)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53) (삼일PWC) ESG Platform,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 (EY한영) ESG 임팩트 허브, (딜로이트안진) ESG센터

54)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율촌, 세종, 지평 등

기업의 ESG 전략 및 성과개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자율공시로 운영 중인 현행 국내 ESG 공시체계에서는 각 회계법인별로 자체 수립한 지표 측정·산출 관련 방법론과 글로벌 권고기준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보고서에 대상기업의 환경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성과 현황이나 예측정보가 재량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관한 표준화된 국내 공시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에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고 기후 관련 공시제도가 법률로 의무화된다면, 기존 ESG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기관들은 축적된 ESG 공시 관련 전문지식 및 프로젝트 경험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질적으로 제고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공시정보의 범위 및 작성기준이 표준화된다면 기관별 고유의 서비스 경쟁력이 더 이상 차별화되지 않거나 기업 측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전문인력 등을 내부화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함
- (인증) 국내 ESG 관련 인증 사업은 현재 녹색·지속가능 채권 발행 시 투자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추후 ESG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제3자 인증(assurance) 절차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관련 규율시장 및 산업이 확대·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개정안에서는 기후 관련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무적 지표 정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같이 비재무적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인증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발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서는 제3자 인증 의무 및 공시채널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 및 논의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ESG 정보공시와 함께 인증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증기준과 인증주체의 전문성(전문인력 양성) 및 독립성 확보(자격 등록·신고제도) 등 규율에 관한 정책과제가 지속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2023년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61건 모두 제3자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61개사), BSI(36개사) 순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은 17개사로 조사됨⁵⁵⁾
- (데이터 제공) 기업은 ESG 관련 공시를 위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지표 측정 및 데이터 수집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개정안에 의해 해당 기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취합,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IT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 최근 ESG 공시규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등 내·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ESG 관련 기초 데이터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⁵⁶⁾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도 Scope 3의 공시의무 여부는 불명확하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위한 보고기업의 범위에 대해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도록 언급하고 있음⁵⁷⁾
 -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ESG 공시·데이터 플랫폼 출시를 통해 ESG 공시와 연계된 자문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 중임⁵⁸⁾

55) 한국거래소, 「'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2023.12.28.

56) 사례: 싱가포르 통화청(MAS), ESG 데이터 플랫폼 ‘Gpmt(Greenprint)’ 출시, 2023.11.16.

57)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2024.4.30.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 개정안은 기업이 환경 개선에 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관리하도록 법률상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내부 대응전략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기존 일부 기업에 한정하여 공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외에도 전체 상장기업이 관련 이행 현황과 구체적인 정보를 일괄 공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행성과가 저조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계획 및 목표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업 간 비교분석 등 관심이 높아져 환경 부문의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 활동 빈도 또는 강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앞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개정안에 의해 기후 부문부터 법정 공시 형태로 의무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감축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이 제도시행 이전보다 증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소가 완화되는 등 간접적인 개선효과로 반영될 수 있음
- 개정안은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기간 단위별로 재무적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정보를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환경경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것임
 - 기존의 환경 성과지표 및 현황에 관한 단순 정보공개나 자율공시 체계와는 달리,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 관리, 이행 경과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도록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허위공시에

58) (삼일PWC) ESG 데이터 플랫폼, (KPMG) ESG LINC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 등 실제 환경 개선을 위한 목표 이행 및 관리경영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기후 관련 공시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⁵⁹⁾ 달성에 대한 이행 속도를 높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확대 위험 등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정보공시 제도 자체는 개별 기업의 공시내용에 기반한 실제 목표 이행 여부 및 실질적인 개선 수준을 분석·판단하여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 이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 강화가 환경 개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중장기적으로 관측될 수 있는 기후 부문의 개선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추정된 주요 해외기관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참고로 제시함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⁶⁰⁾가 제시한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⁶¹⁾에 따르면 저탄소 전환경로(transition pathway)별 기후변화 피해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2℃ 수준인 한국의 평균온도는 Net Zero 2050, Below 2℃, Delayed transition 등의 경로를 준수할 때 2100년경

59)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개별 국가가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선언하였고 기존 2030년 NDC 수준도 자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임

60) NGFS는 기후변화·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 2019년 11월에 가입한 바 있음

61) NGFS, *NGFS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2023.11.

11.6~14.0℃ 수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됨⁶²⁾⁶³⁾

- 그러나 Current policies 경로를 따르는 경우, 2100년경 12.9~16.7℃ 수준까지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강수량은 과거(1986~2006년) 대비 1.8~23.3%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폭염, 태풍, 홍수 및 가뭄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규모를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Net Zero 2050, Below 2℃, Delayed transition 등의 경로 하에서는 자연재해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나 Current policies 경로를 따르는 경우 자연재해 발생 규모가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함
- 예를 들어, Current policies 경로 하에서는 2100년경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비중이 과거 대비 0~80%, 태풍 피해규모는 2015년 대비 10.9~17.2%, 홍수 피해규모는 2015년 대비 20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정함
- 이 외에도 쌀(-24.4~21.8%), 옥수수(-96.7~18.0%), 콩(-56.5~27.0%) 등의 생산감소도 우려됨
- IMF는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높은 탄소 가격과 에너지 투자비용 지출이 발생하나, 기후변화 관련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등 물리적 피해손실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⁶⁴⁾

62) 상세한 기후변화 관련 NGFS 시나리오 분석 및 데이터는 IMF의 ‘Climate Change Dashboard’를 참조바람<<https://climatedata.imf.org/pages/ngfs#ngfs7>>

63)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NGFS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ESG ISSUE』, 2024.2.29.

64) IMF, Benefits of Accelerating the Climate Transition Outweigh the Costs, 2023.12.5.(최종 검색일: 2024.9.5.),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2/05/benefits-of-accelerating-the-climate-transition-outweigh-the-costs>>

3. 비용과 편익 분석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양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영향분석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
- 정량화는 분석방법론과 분석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검증된 분석방법론과 유사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증된 방법론과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방식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 이론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큰 경우에는 정량화가 어려운데, 입법영향분석의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델설계, 설문조사(한계지불의사액 조사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방식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은 분석유형이 다양하고 분석 대상도 많지만,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화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 특히 명확한 분석의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비용편익분석은 오히려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
- 이에 정성적인 방식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비용과 편익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함([표 13])

[표 13]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용	직접 비용	단기 (정성) 피규제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전체 상장기업 등)은 공시를 위한 이행부담 및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장기 (정성) 기업의 기후 관련 데이터 측정·위험 관리 등 공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간접 비용	(정성) 공시 관련 조사·감독·제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정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목표 불이행, 정책 미흡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관련 주체의 책임 부담이 증가한다.
편익	직접 편익	단기 (정성) 이해관계자(기관투자자·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기후 관련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개선되어,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 (정성)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접 편익	(정성) ESG 관련 주요 서비스 산업의 육성, 영향력 및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성)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규모를 완화시키고, 관련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은 금융위원회(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제출의견으로 같음

[표 14]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이해관계자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금융위원회	2023.12. 정무위원회 제출의견	신중 검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12. 공개 의견제출	개정안에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12. 정무위원회 제출의견	
대한상공회의소	2023.12. 정무위원회 제출의견	
전국은행연합회	2023.12. 정무위원회 제출의견	

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⁶⁵⁾
 -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공시규제를 입법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기후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외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 현황을 지켜보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5)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출자료」, 2023.12.14.

- 국제적으로 기후를 포함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시 제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초기 단계임
- 국내의 경우도 기후를 포함한 ESG 공시 관련 제도(공시기준, 대상기업, 도입 시기 등)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한편, 국내 공시기준이 마련되고 대규모 상장기업부터 시행을 거쳐 어느정도 여건이 성숙된 후에 법률 의무화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의무대상 기업의 범위가 과도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도 불분명하여 국내 기업이 공시를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⁶⁶⁾
 - 사업보고서 내 기후공시를 추가하는 입법에 앞서 통합적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임
 -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의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따라 기후공시를 우선하여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내의 기후 관련 정보공시 도입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ESG 금융추진단 등 사회적 논의 및 주요국 의무화 동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공시내용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순히 기후공시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6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917호)」, 2023.12.

-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공시대상 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한정해도 충분하고, Scope 3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임
- 이 외에도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장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탄소배출량 검증업체 및 관련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사회적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⁶⁷⁾

- 국내외 ESG 공시제도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기업의 준비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공시제도의 도입 및 이행 현황 등을 지켜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정공시 의무화 논의는 국내 공시기준 마련 등 공시여건이 조성되고, 거래소 공시로 우선 시행될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는 방향은 아직 국내외 공시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공시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이중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명확한 가이드 없이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그린워싱 등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한 소송 및 불성실공시 등 기업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어 동 개정안에 반대함
- 추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하여, 국내 지속가

67)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함(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출자료」, 2023.12.14.)

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였음⁶⁸⁾

68)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2024.8.

IV. 유사 입법례⁶⁹⁾

1. 유럽연합(EU)

□ ESG 공시제도: NFRD, CSRD

-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 최초로 기업의 환경 및 사회 관련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⁷⁰⁾을 제정함
 - NFRD에 기반한 최초 공시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대상은 대규모 상장기업,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권으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다만, 표준화된 기준이 미흡하고 제3자 인증 의무가 없어 해당 지침에 따른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NFRD의 개정안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초안을 제안하였고,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23년 1월 6일부터 발효됨⁷¹⁾

69)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상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 도입한 유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해외의 ESG 공시제도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례를 제시하였음

70) European Union,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71)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 CSRD는 기존 NFRD에 비해 적용대상 기업 범위 확대, 공시정보의 구체화, 감사(인증) 의무 도입,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마련 등 공개 요건을 강화하였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발효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 CSRD 내용을 반영하여 자국 법률에 입법화하여야 함

□ ESG 공시기준: ESRS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인 CSRD 이행을 위한 위임법안(Delegated Act)을 발표하고,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채택함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은 2022년 5월 ESRS의 초안을 공개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31일 ESRS First Set을 확정함
 - ESRS First Set은 공통기준 2개(ESRS 1, ESRS 2)와 10개의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먼저 ESRS 1(일반 요구사항·원칙)에서 정하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중요 정보에 대해 ESRS 2(일반공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함⁷²⁾
- 한편, EU 의회와 이사회는 2024년 2월 7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산업별 공시기준을 포함한 ESRS Second Set의 도입 및 시행을 2026년 6월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함⁷³⁾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72) 참고로 ESRS와 ISSB의 IFRS 공시기준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기업의 공시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임

73) EU Council, Council and Parliament agree to delay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ertain sectors and third-country companies by two years, Press release, 2024.2.7.

- ESRS Second Set에는 산업별 공시기준(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⁷⁴)과 상장 중소기업 및 非EU 기업 대상의 부문별 기준이 포함될 예정임

□ 공시 대상기업 및 적용시기

-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내 대규모 기업(비상장 포함) 외에도 非EU 기업까지 포함되어, 기업 유형별로 2025년부터 최초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표 15])
- EU 회원국들은 CSRD를 기준으로 공시제도를 자국법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국가별 법률의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시행시점은 상이할 수 있음

[표 15]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기업 유형 구분	2025년 (FY24)	2026년 (FY25)	2027년 (FY26)	2028년 (FY27)	2029년 (FY28)
(1) 기존 NFRD 적용 대상기업	○————→				
(2) EU 내 대기업		○————→			
(3) 상장 중소기업 (일부 제외)		선택가능	○————○→		
(4) 非EU 지배기업					○————→

주: (1) EU 내 종속기업이 근로자 500명 이상인 EU 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2) 대기업(Large undertakings) 기준: ① 근로자 250명 초과, ②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③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非EU 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포함)
 (3) 제외 기준: 초소형 상장기업(① 근로자 10인 이하, ②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③ 순매출 70만 유로 이하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 ESRS Second Set 적용 예정
 (4) ① EU 내 최근 2년간 연결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에 해당하고, ② EU 내 종속기업이 대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 or ③ EU 현지법인(지점)의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인 非EU 기업

자료: European Commission

74) 석유 및 가스, 석탄·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액세서리·신발 및 보석류

2. 미국

- ESG 공시제도: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 for Investors」(SEC, 2024.3.6.)
- 미국은 ESG 정보공시 특히, 기후 관련 정보에 특정한 공시를 법제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방 차원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음
 - 참고로 2021년 6월 미국 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발의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Corporat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을 통과시킴⁷⁵⁾
 - 해당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Title 1-「ESG 공시 간소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과 Title 4-「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임⁷⁶⁾
- 이와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2022년 3월 미국 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협의 영향 및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초안을 공개하였고,⁷⁷⁾ 이후 논의를 거쳐 2024년 3월 6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함⁷⁸⁾

75) Congress.gov, H.R.1187-117th Congress(2021-2022):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2021.6.<<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187>>(최종 검색일: 2024.9.5.)

76) Title 1은 기업에게 ESG 정보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공시를 요구하고 SEC가 공시대상 범위와 표준화된 공시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Title 4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그에 대한 식별·평가·관리 전략 및 프로세스, 재무적 영향 등 기후 이슈에 대한 특정 공시를 연차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규정함

77) SEC,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2.3.21.

- 그러나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기업과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의무가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발표 이후 미국 주(州) 정부와 환경단체, 기업 등이 SEC를 상대로 기후공시 규정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권한 소송을 다수 제기함에 따라 추후 실제 시행까지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현재 효력정지 상태, 2024.4.)
 - SEC는 Scope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최종 제외하였고, Scope 1·2 배출량도 기업규모 및 중요성 판단에 따라 선택 공시하도록 공시의무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예측성 기재정보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신설함

□ ESG 공시기준: SEC Regulation

- 현재 미국 SEC 기후 관련 정보공시 규정은 별도의 공시기준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규칙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SEC가 제안한 기후공시 규정에 의하면, 미국 내 상장기업은 기후 위험과 지출 및 재무적 영향 등 기후변화 관련 중요 정보를 ‘Regulation S-K’에 따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및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Regulation S-X’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각각 의무공시하여야 함⁷⁹⁾
 - 참고로 SEC는 2010년 환경 및 기후 정보를 Form 10-K에 공개하는 공시기준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가이드스’(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78)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4.3.6.<원문: <https://www.sec.gov/files/rules/final/2024/33-11275.pdf>>

79) 해당 SEC 규정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하위법령으로, SEC는 비재무적 정보공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Regulation S-K’ 및 재무제표와 관련된 형식, 내용 등 공시기준을 명시한 ‘Regulation S-X’를 통해 기업공시 관련 규율체계를 운영 중임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⁸⁰를 통해 자율공시 체계로 운영한 바 있음

□ 공시 대상기업 및 적용시기

- 적용대상은 모든 미국 내 상장기업(해외기업 포함)에 대해 공시항목 및 기업 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법정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함([표 16])
- 이에 현재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 약 10개사가 SEC 규정에 따른 기후 공시의무를 부담할 예정이고, 미국 상장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속한 국내 기업들도 추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표 16] 미국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기업 규모별 구분	재무제표 주식 (Reg. S-X)	정기 연차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Reg. S-K)					
		기후 일반	기후 특수*	Scope 1·2	제한적 인증	합리적 인증	XBRL 적용
(1) 상장 대기업	2026년	2026년	2027년	2027년	2030년	2034년	2027년
(2) 상장 중견기업	2027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2년	-	2027년
(3) 상장 소기업	2028년	2028년	2029년	-	-	-	2028년

주: (1)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2) 상장 중견기업(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 +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3) ① 상장 소기업(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 or 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 +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② 비상장 소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y), ③ 신생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 기후 관련 활동, 전환계획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 SEC

80)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10.2.2.<원문: <https://www.sec.gov/files/rules/interp/2010/33-9106.pdf>>

- 캘리포니아주(州)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법: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SB-253),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SB-261)
- 202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초로 주(州) 차원에서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 및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법」(SB-261)을 통과시킴⁸¹⁾
- ‘SB-253’은 캘리포니아 소재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Scope 3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법률이고, ‘SB-261’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 해당 법률은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 규정과 달리 적용대상 범위에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Scope 1·2 배출량 및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과 관리조치에 대한 정보를 2026년부터 의무공시하도록 함(Scope 3 배출량 공시는 1년 유예)
- 다만, 2024년 1월 30일 미국의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관련 규제가 주(州) 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상당한 비용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 전 합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⁸²⁾

81) SB-253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253>

SB-261 <원문: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261>

82)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Sues California Over Climate Disclosure Laws, 2024.1.30.

V. 사후분석 제안

- 개정안에 의해 기후 관련 정보공시가 의무 도입·시행된 이후 약 3~5년 경과 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제안함
 - 기본적으로 정보공시의 경제적 효과는 도입 시점 이전과 이후 기간의 시계열을 충분히 확보하여, 회귀분석 모형(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 가능함
 -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는 기업가치 등 재무적 지표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수준을 측정하는 대용변수(proxy)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이 외에도 의무공시 도입 여부 또는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 측 공시 이행비용, △공시수준(disclosure quality) 차이, △관련 산업 성장 및 성숙도, △감독·규율체계 필요성 등을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함
 - 기업규모 및 산업별 특성 차이에 따른 사후 영향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차이에 미치는 결정요인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컨대, 기후 관련 위험관리 성과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정보비대칭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일수록 불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유인이 낮아 실제 공시품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Verrecchia, 1983; Rogers and Stocken, 2005)
 -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시 이행비용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외부효과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ESG 관련 정책적 지원과제와 실효적인 공시체계를 보완·정립해 나가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기준」, 2023.
- 금융감독원,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2.2.18.
-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3.2.22.
- 금융감독원,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4.2.20.
-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출자료」, 2023.12.1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2023.5.1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024.4.2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1.14.
- 노정희·최종서, 「자발적으로 공시된 탄소배출정보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제41권 제6호, 2016, pp.105-157.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2023.8.28.
- 박지영·이지윤·황나래·신제원, 「환경지출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의 특성 및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1권 제3호, 2023, pp.1-28.
- 송홍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3.
- 이기세·전성일, 「탄소배출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제27권 제2호, 2019, pp.69-98.
- 이상호,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1.
- 이인형,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21.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

- 표」, 2023.12.28.
-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2024.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SG ATOZ: 10.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규제와의 상관관계」, 『Issue Paper』, 2021.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917호)」, 2023.12.
-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NGFS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ESG ISSUE』, 2024.2.29.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2024.4.12.
-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FAQ」, 2024.4.30.
- Akerlof, G.,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pp.488-500.
- Berg, F., Kolbel, J., and Rigobon R., 2022,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Review of Finance*, 26(6), pp.1315-1344.
- Billio, M., Costola, M., Hristova, I., Latino, C., and Pelizzon, L., 2020, Inside the ESG ratings: (Dis)agreement and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8(5), pp. 1426-1445.
- BlakRock, *Exploring ESG: A Practitioner’s Perspective*, 2016.
- Boffo, R. and R. Patalano,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Paris., 2020.
- Bolton, P. and Kacperczyk, M., 2023, Global Pricing of Carbon-Transition Risk, *Journal of Finance*, 78(6), pp.3677-3754.
- Chatterji, A. K., Durand R., Levine D. I., and Touboul, S., 2016, Do ratings of firms converge? Implications for managers, investors and strategy researche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8), pp.1597-1614.
- Christensen, D. M., Serafeim, G., and Sikochi A., 2022, Why is corporate virtue

in the eye of the beholder? The case of ESG ratings, *Accounting Review*, 97(1), pp.147-175.

Congress.gov, H.R.1187-117th Congress(2021-2022):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 2021.6.

Dhaliwal, D., Li, O. Z., Tsang, A., and Yang, Y. G., 2011,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Accounting Review*, 86(1), pp.59-100.

Dhaliwal D., Radhakrishnan, S., Tsang, A., and Yang, Y. G., 2012, Nonfinancial disclosure and analyst forecast accuracy: international evide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Accounting Review*, 87(3), pp. 723-759.

Downar, B., Ernstberger, J., Reichelstein, S., Schwenen, S., and Zaklan, A., 2021, The impact of carbon disclosure mandates on emissions and financial operating performance,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6(3), pp.1137-1175.

ESMA, *ESG ratings: Status and key issues ahead, Report on Trends, Risks and Vulnerabilities*, No. 1., 2021.

European Union,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European Union, Proposal for a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2021.

EU Council, Council and Parliament agree to delay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ertain sectors and third-country companies by two years, Press release, 2024.2.7.

- Fahad, P. and Nidheesh, K. B., 2020, Determinants of CSR Disclosure : An Evidence from India, *Journal of Indian Business Research*, 13(1), pp. 110-133.
- Grewal, J., Riedl, E. J., and Serafeim, G., 2019, Market Reaction to Mandatory Nonfinancial Disclosure, *Management Science*, 65(7), pp.3061-3084.
- Grewal, J., Hauptmann, C., and Serafeim, G., 2021, Material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Stock Price Inform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1(3), pp.513-544.
-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2*, 2023.11.
-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Special Report 4th Revision, 2021.
- Khan, M., Serafeim, G., and Yoon, A., 2016,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Accounting Review*, 91(6), pp.1697-1724.
- Kotsantonis, S. and Serafeim, G., 2019, Four things no one will tell you about ESG data,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31(2), pp.50-58.
- Matsumura, E. M., Prakash, R., and Vera-Munoz, S. C., 2014, Firm-value effects of carbon emissions and carbon disclosures, *Accounting Review*, 89(2), pp. 695-724.
- NGFS, *NGFS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2023.11.
- PWC, *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3: Trust, tech and transformation: Navigating investor priorities*, 2023.11.
- Rogers, J. L., and Stocken, P. C., 2005, Credibility of Management Forecasts, *Accounting Review*, 80(4), pp.1233-1260.
- Rossi, F. and Harjoto, M. A., 2020, Corporate non-financial disclosure, firm value, risk, and agency costs: evidence from Italian listed companies,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14(5), pp.1149-1181.
- SEC,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2.3.21.

-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4.3.6.
- UN Environment Programme,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2023.7.27.
- UNFCCC, *Net Zero Financing Roadmaps,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2020*, 2021.
- U.S. Chamber of Commerce, U.S. Chamber Sues California Over Climate Disclosure Laws, 2024.1.30.
- Verrecchia, R., 1983, Discretionary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pp.179-194.
- Wang, M. C.,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Characteristics and the Disclosur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Sustainability*, 9(4), pp.1-14.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1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52) 입법영향분석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	2024. 9. 19.	김규호
제1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2937호) 입법영향분석 -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 지중화 사업 인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2024. 9. 12.	이승만
제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9) 입법영향분석 :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합리화	2024. 9. 6.	허석재
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33) 입법영향분석 - 화재위험 높은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 지정 및 화재위험평가 도입 -	2024. 8. 30.	배재현 고영준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48) 입법영향분석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	2024. 8. 23.	정준화
제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2024. 7. 23.	김주경 임사무엘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4792호) 입법영향분석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	2024. 6. 28.	이동영
제4호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필요적 절차 -	2024. 4. 12.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제3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 -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	2023. 12. 29.	심성은 김광현
제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2023. 12. 29.	김형진 김주경
제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 바닥충격을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	2023. 12. 29.	김강산 박인숙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2호

발간일	2024년 9월 26일
발행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편집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4510(대표)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TEL 02·2269·5523)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 조직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3502-71-8(93360)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2113-01

© 국회입법조사처, 2024

